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

- **제1조**(목적) 이 규정은 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① 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(이하 "생활관"이라 한다)은 국가재정 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한밭관과 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(Build-Transfer-Lease, 이하 "BTL"이라 한다)으로 설치된 BTL관으로 구분한다.
- ② 한밭관과 BTL관에 두는 생활관의 명칭은 다음 각 호과 같다.
- 1. 한밭관: 성실동, 인화동
- 2. BTL관: 목련화동, 소나무동
- 제3조(업무) 생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생활관 입 · 퇴사에 관한 사항
 - 3. 생활관의 시설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조직) ① 생활관에 학생생활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을 두고, 관장은 한밭 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②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(이하 "관생"이라 한다)을 상담지도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
- ③ 관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생활지도위원(이하 "지도위원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 - ④ 생활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, 행정실에 행정실장 또는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5조(임무) ① 관장은 생활관 운영을 총괄한다.
 - ② 생활지도 교수는 관생의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 - ③ 지도위원은 관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 - ④ 행정실장 또는 팀장은 생활관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**제6조**(운영위원회) ①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이 규정과 시행세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에 관한 사항
 - 2. 생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
 -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.<개정, 2014.4.10.>

- ④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장, 학생과장, 총무과장, 시설과장 및 관생대표 4명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3명, 관련전문가 1명 및 학외인사 1명으로 하며, 총장이 임명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개정, 2017. 6. 2.>
- ⑤ 운영위원회는 관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7조(BTL관 성과평가위원회) ① BTL관의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BTL 성과평가위원회(이하 "성과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BTL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BTL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③ 성과평가위원회는 관장, 본교 교직원 3명, BTL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3명, 생활관 의 관생대표 3명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 장은 관장이 된다.
 - ④ 성과평가위원회는 관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8조(개관 기간) 생활관 개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개관과 특별개관으로 구분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.
 - 1. 정기개관: 제1학기 및 제2학기 기간
 - 2. 특별개관: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
- **제9조**(관생수칙) ① 관장은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생수 칙을 따로 정한다.
 - ② 관생은 관장이 정하는 관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관생정원) 생활관의 관생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**제11조**(관생활동) ① 건전한 생활관 생활과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장 은 관생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.
 - ② 관생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생 자치기구를 둘 수 있다.
 - ③ 관생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**제12조**(포상 및 처분) ① 생활관에서 공동생활이나 각종 행사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.
- ② 관장은 관생이 이 규정이나 관생수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.
 - 1. 벌점
 - 2. 주의
 - 3. 경고
 - 4. 퇴사
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**제13조**(생활관 이용자격) ①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본교 재학생, 신입생 및 외국인 학생으로 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관을 이용할 수 없다.
- 1. 본교의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 - 2.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- 3.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이 있어 공동생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4. 휴학 중인 사람
 - 5. 그 밖에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
 - ③ 관장은 본교 교육목적과 생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생이 아닌 사람에게 생활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14조(관생선발) ①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학생은 관생선발 기한까지 입사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5. 9. 30.>
 - ② 관생선발 기준 및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 9. 30.>
- **제15조**(퇴사) ① 생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.
 - 1.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 벌점을 받은 사람
 - 2. 생활관비를 미납한 사람
 - 3.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생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
 - ② 생활관 사용기간 중간에 퇴사하려는 사람은 퇴사일 5일 이전에 중도퇴사원서와 공용물품 반납확인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③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사람은 공용물품 반납확인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제16조(변상책임) 관생 또는 생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활관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.
- **제17조**(경비부담) ① 생활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생활관비는 생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한다.
 - ② 관생 외의 이용자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생활관비)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비로 구성하되 관장이 따로 정한다.
 - ② 관장은 사용기간 중도에 퇴사하는 관생에게 생활관비를 반환하되, 그 반환 기준은 따로 정한다.
- 제19조(생활관비 납부기한) 입사를 통보받은 사람은 관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생활 관비를 완납해야 한다.
- **제20조**(납부금의 용도) ① 생활관비 등 납부금의 사용 용도는 생활관의 운영관리에 한정한다.

- ② 납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21조(회계) ① 생활관 회계연도는 본교 학년도로 한다.
 - ② 생활관 회계는 「국립대학(교) 비 국고 회계관리 규정」과 「한밭대학교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」을 준용한다.
- 제22조(예산과 결산) ① 관장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까지 세입·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되, 이때는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세입·세출결산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<개정, 2014.4.10.>
 - 1. 생활관비 납부액: 학년도 개시 15일전
 - 2. 생활관 운영상 발생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: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
 - 3. 당해연도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 (과목별 세부내역서) :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
 - 4. 생활관 운영 결산보고서: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
 - 5. 생활관 운영 재무결산 보고서: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
- 제23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칙(규정 제582호, 2007. 5. 16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740호, 2013. 3. 11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817호, 2014. 4. 1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제4항제5호는 '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'이 적용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을 유예한다.

부칙(규정 제850호, 2015. 3. 2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866호, 2015. 9. 30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868호, 2016. 1. 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「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4항 중 "학생과장"을 "학생취업과장"으로 한다.

①부터 ②까지 생략

부칙(학칙 제25호, 2017. 6. 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「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4항 중 "학생취업과장"을 "학생과장"으로 한다.

①부터 ③까지 생략